

瑞山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
審 查 報 告 書

2000. 11. 7
總務委員會

1. 審 查 經 過

- 가. 提出日字 : 2000. 11. 3
- 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- 다. 回附日字 : 2000. 11. 4
- 라. 上程日字 : 2000. 11. 7

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 : 會計課長 崔春煥)

가. 改正理由

-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불용품은 물품 취득당시의 장부가격에 따라 소요대상 기관에 소요조회를 수시 시행하고 있으나,
- 이 불용품에 대하여 소요대상기관 및 매입희망자의 유무를 불문하고 소요조회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과 감정수수료를 낭비하고 있어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하고 함.

나. 主要骨子

-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종전에는 단위당 취득가격(장부가격)이 1천만원이상인 물품은 도산하 시·군자치단체와 정부 각 부처 타 시·도에 대하여 소요조회를 하고 (안 제17조제3항1호).

- 단위당 취득가격(장부가격)이 1천만원이하 5백만원이상의 재 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도산하 시·군자치단체에 소요조회 하였으나(안 제17조제3항2호).
- 이를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하고자 함(안 제17조제3항).
- 불용품의 매각처분시 감정평가 범위를 물품장부상 취득가격 “1천만원 이상”을 “2천만원이상”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(안 제18조4항).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지방자치단체의 재물조사는 수시로 하며 정기재물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나, 재물조사 후 불용처분대상 물품 발생시
- 물품의 단위당 취득가격이 5백만원이상인 경우는 장부가격에 따라 감정평가는 물론, 정부각부처, 타 시·도광역시 시·군·구, 도산하 시·군·구 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고 있음.
- 소요조회대상 물품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상 소요 조회를 하여야하는 행정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나,
- 취득당시의 가격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불용품을 처리할 경우 행정철자가 간소화되므로 신속한 처분이 될뿐만 아니라, 행정력 향상과 감정평가의 대상이 줄어들게 되므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어 현실과 부합된다고 판단되며, 본 조례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6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제안번호	제 119 호
의결년월일	2000. 11. (제 회)

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자	서산시장
제출년월일	2000. 11. 3.

서산시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1. 3

제 출 자 : 서산시장

1. 개정이유

-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에 의거 불용품 처리에 따른 소요조회 및 감정대상 범위를 단위당 취득가격을 1천만원으로 기준함으로 소요대상기관 및 매입희망자가 없는데도 소요조회 및 감정을 실시해야 함으로써, 불필요한 행정력과 감정수수료를 낭비하고 있어 소요조회 및 감정대상 범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불용품의 신속처분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종전에는 단위당 취득가격(장부가격)이 1천만원이상인 물품은 도산하 시·군자치단체와 정부 각부처 타 시도에 대하여 소요조회를 하고(제17조제3항1호),
- 나. 단위당 취득가격(장부가격)이 1천만원이하 5백만원이상의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도산하 시·군자치단체에 소요조회 하였으나(제17조제3항2호),
- 다. 이를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하고자 함.(안 제17조제3항)
- 라. 불용품의 매각처분시 감정평가 범위를 물품장부상 취득가격 “1천만원 이상”을 “2천만원이상”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.(안 제18조4항)

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-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에 의거 불용품 처리에 따른 소요조회 및 감정대상 범위를 단위당 취득가격을 1천만원으로 기준함으로 소요대상기관 및 매입희망자가 없는데도 소요조회 및 감정을 실시해야 함으로써, 불필요한 행정력과 감정수수료를 낭비하고 있어 소요조회 및 감정대상 범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불용품의 신속처분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종전에는 단위당 취득가격(장부가격)이 1천만원이상인 물품은 도산하 시·군자치단체와 정부 각부처 타 시도에 대하여 소요조회를 하고(제17조제3항1호),
- 나. 단위당 취득가격(장부가격)이 1천만원이하 5백만원이상의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도산하 시·군자치단체에 소요조회 하였으나(제17조제3항2호),
- 다. 이를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하고자 함.(안 제17조제3항)
- 라. 불용품의 매각처분시 감정평가 범위를 물품장부상 취득가격 “1천만원 이상”을 “2천만원이상”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.(안 제18조4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물품관리법 제35조(불용의 결정등)
-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9조(불용결정의 기준등)
-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(불용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분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라. 기타사항 : 충청남도 총무 43500 - 2112(2000.8.16) “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개선대책”

심사필	기획감사팀당원	✓
	2000.10.24 제	

서산시조례 제 호

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중 “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”를 “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 취득가격(장부가격)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경우로 한다.”로 하고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8조제4항중 “1천만원”을 “2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-② (생략)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<u>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 <p>1. <u>물품의 단위당 취득가격(장부가격)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도 산하 시·군 자치단체와 정부 각 부처 타 시도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2. <u>물품의 단위당 취득가격(장부가격)이 1천만원미만 5백만원이상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의 경우에는 도산하 시·군 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8조(불용품의 매각) ①-③ (생략)</p> <p>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장부상 취득가격이 <u>1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(이하 “감정기관”이라 한다)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7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-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-----<u>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 취득가격(장부가격)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경우로 한다.</u>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제18조(불용품의 매각) ①-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----- ----- ----- -----<u>2천만원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